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3. 정준호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4. 7. 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2024. 8. 20.)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회부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8. 23.)

상정 · 축조심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현행 법령상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경로당의 지역적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경로당 급식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급식지원에 필요한 인건비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상당수의 경로당이 급식지원 인력에 대해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부식비 및 급식 지원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현행법상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등 제한된 범위의 경로당 지원에서 개정안과 같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고령화로 경로당 이용 대상 노인이 증가하고 운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경로당 운영지원(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가 개정되어 부식구입비에 사용이 가능함.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